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74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정혜경 · 전종덕 · 손 솔
최혁진 · 윤종오 · 박해철
용혜인 · 한창민 · 허성무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8%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하여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

가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생에너지 자립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공급과 사용을 확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해당 영역 내에서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역재생에너지 자립(「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된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체계 조성)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7. (생 략) ③ · ④ (생 략)	<u>제3조(재생에너지 자립 노력) 국</u> <u>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u> <u>지 공급과 사용을 확대하여 각</u> <u>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서 필</u> <u>요한 에너지량에 해당하는 재</u> <u>생에너지를 해당 영역 내에서</u> <u>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지역재생에너지 자립</u>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u> <u>개발·이용·보급 촉진법」</u> <u>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u> <u>규정된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u> <u>에너지의 지방자치단체 내에</u> <u>서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체계</u> <u>구성)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u>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